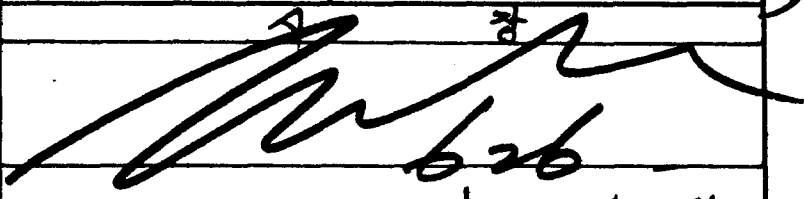



기안용지

71부처서도
전경구정 전경사령

분류기호 문서번호	경무 181~		(전화번호)	전경구정 전경사령	
처리기간	75.6.				
시행일자	75.6.				
보존년한	영구				
보조 기관	제1부시장 경찰국장 제1부국장	경무과장			
기안책임자	정경장학만		조 교통과		
경수 참조	내부결재		발신	통 계 	
제목	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 고시				
1975. 6. 26					
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고시를 전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.					
					정서
첨부 : 1. 개정사유 1부 2. 개정안 1부 3. 제한약도 1부 끝					관인
					발송

1. 개 정 사 유

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수도방위력을
저해하는 도심부 교통량 집중을 억제하고

화물차량의 수송체계와 소통 질서를 확립
하기 위하여 반경 5KM (제2 순환선) 내에

서의 화물 차량 통행을 제한함에 있음.

고 시 안)

고시안심사	1975. 6. 23 제	91호
심사자	법제	법무관
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
서울특별시고시제 호

도로교통법에 의한통행 제한고시

도로교통법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^{자동차}의 통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 1975. 6.

서울특별시장

1. (통행제한) 화물자동차 및 특수^{자동차}의 통행 제한을 별표와 같이 한다.
2. (예외규정) 통행차량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케미론, 급수차, ~~차량~~ 청소차, 우편 및 전신전화, 수도공사용 등 공공용 특수 화물 차량 ^{식물차}
 - 나. 양곡, 연탄, 생선, 소재 등 생활 필수품 수송차량으로서 6톤 미만의 차량. 다만, 6톤 이상 8톤 미만의 생활 필수품 수송 화물 차량이 제한구역을 통행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통행허가를 받아야 한다.
3. (제1한강교 통행제한) 제1한강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화물 차량의 24시간통행제한 구역으로 한다.
4. (정기노선화물 차량) 정기노선화물 차량은 ~~75. 7. 10부터~~ 시행반경 5km 이내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.
5. (폐지고시) 서울특별시고시제32호(69.5.2), 서울특별시고시제87호(69.12.11), 서울특별시고시제24호(70.6.3), 서울특별시고시제58호(71.9.17)는 이를 폐지한다.
 1975년 7월 1일 부터
6. (시행일) 이 고시는 ~~공포한 날로부터~~ 시행한다.

별지

통행제한차종, 시간 및 구역

차종구분	제한시간	제한구역	참고
구. 장대차 (전안)	07:00~	한수이북전역	다만, 다음구분은
또는 좌측승객차	22:00		07:30~09:30.
길이차 12미터			17:00~20:00 간에
이상의 장대차			행하여 통행제한
및 좌측승객			한다.
8톤 이상인			
자동차.			○ 제2환강교 - 강변
예: 콘크리트,			5로 (강변5로 준공
추레차)			시까지는 등교동~
			연희동) ~ 구역
			또는 와성교 ~ 연
			사교 ~ 연신배크
			거리 - 파주
			○ 제3환강교 - 북
			한남동거리 - 용배교
			~ 화양로차차~
			등원로~ 성동서~
			마장~ 제기~ 수계
			리~ 망우리 방면
			○ 강변로.

차종 구분	제한시간	계 환 구 역	참 고
나. 8톤 이상 화물차 (최저 중량 8톤 이상 인 화물자동차)	07:00~ 22:00	1. 등교동3거리~아현3거리~ 시청~ 을지로6가 ~ 화왕삼리.	
		2. 공덕동4거리~ 아현동3거리~ 서대문~ 광화문~ 종로6가~ 신원 동로터리.	
		3. 홍은동4거리~ 독립문~ 외주로 4거리~ 서울역	
		4. 삼각지~ 서울역~ 남대문~시 청~ 중앙청~ 호자동~ 세검동 3거리	
		5. 독립문~ 사직터널~ 중앙청~ 안국동로터리~ 혜곡로터리 ~ 돈암 동~ 미아리고개 ^{~청량~성제영주~}	
		6. 동아일보앞~ 광교~ 청계6가~ 마장랜드 (3/1고가 포함)	
		7. 서울역~ 남대문~ 환은~ 미도 파~ 종로1가~ 안국동로터리	
		8. 중림동~ 염천교~ 남대문~ 서울역	

좌측 구분	개원시점	개 한 주 역	참 고
		~ 퇴계로 1가 ~ 퇴계 6가 ~ 광희로 1리 ~ 을지로 7가.	
		9. 명동입구 ~ 성모병원 ~ 전흥로 ~ 퇴계 6가.	
		10. 중앙우체국앞 ~ 충무로 종	
		11. 3.1로 입구 ~ 을지로 2가 ~ 청계 2가 ~ 종로 2가 ~ 압구동 ~ 재동.	
		12. 중부서 입구 ~ 을지로 2가 ~ 청계 2가 ~ 종로 2가 ~ 충무로 앞.	
		13. 퇴계 3가 ~ 을지로 3가 ~ 종로 3가 ~ 돈화문 앞.	
		14. 전흥상가 ~ 을지로 3가 ~ 청계 3가 ~ 종로 3가 ~ 종묘.	
		15. 퇴계 4가 ~ 을지로 4가 ~ 종로 4가 ~ 청남동	
		16. 퇴계 5가 ~ 을지로 5가 ~ 청계 5가 ~ 이화 동 3거리 ~ 원남로 1리 ~ 삼계동	

책종 구분	제한시간	제한구역	참고
		해화등로라리.	
		17. 퇴계6가 ~ 을지6가 ~ 청계6가 ~ 종로6가 ~ (등대문) ~ 이화등.	
		18. 등실저 ~ 불판3거리 ~ 삼철리밭 ~ 삼선교 입구.	
		19. 대한제국회관 입구 ~ 투교등 ~ 종로가.	
		20. 시청앞 ~ 소공동 ~ 신사계 앞.	
		21. 원효로4가 쪽강변로 입구 ~ 흥산사 앞 ~ 남영등.	
		22. 중인동 - 한성여고 입구	
		23. 신림동 ~ 대왕로라리 ~ 안암로라리 ~ 둔암로라리.	
		24. 삼척저 ~ 이태원 ~ 북한남3거리 ~ 약수4거리 ~ 신당4거리 ~ 중인동	

차종구분	제한시간	제한구역	참고
		25. 강변3로입구 ~ 한남동4거리 ~ 남산1호터널.	
		26. 남영동 ~ 용궁입구 ~ 용선동 ~ 남산관광도로.	
		27. 북한강 피출소 ~ 원효교.	
다. 3.5톤이상 ~ 8톤	07:30 ~	전 (4) 제한 구역과 같다.	
더먼의 화물자동차	09:30		
차 (적재중량			
3.5톤이상 ~ 8톤	17:00 ~		
더먼의 화물자동차	20:00		
차)			
라. 3.5톤 이상 ~ 8톤	07:30 ~	서울역 ~ 의주로로터리 ~ 서	
더먼의	20:00	대문 ~ 독립문 ~ 사직 ~ 구로길	
화물자동차 (")		청앞 ~ 청와대앞 ~ 팔판3거리 ~	
		종십자 ~ 안국동 ~ 재동 ~ 원남 ~	
		제화로터리 ~ 이화로터리 ~ 등	
		대문 ~ 청계6가 ~ 을지6가 ~	
		회계6가 ~ 회계1가 ~ 남향시장	
		~ 서울역 연결구간	

차종 구분	제한시간	제한구역	참조
대 1.5톤이상 ~ 3.5톤	07:30~	전 (4). 제한구역과 같다.	
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(적재중량	09:30.		
1.5톤이상 ~ 3.5톤			
미만의 화물자동차			
차로서 3축차			
포함)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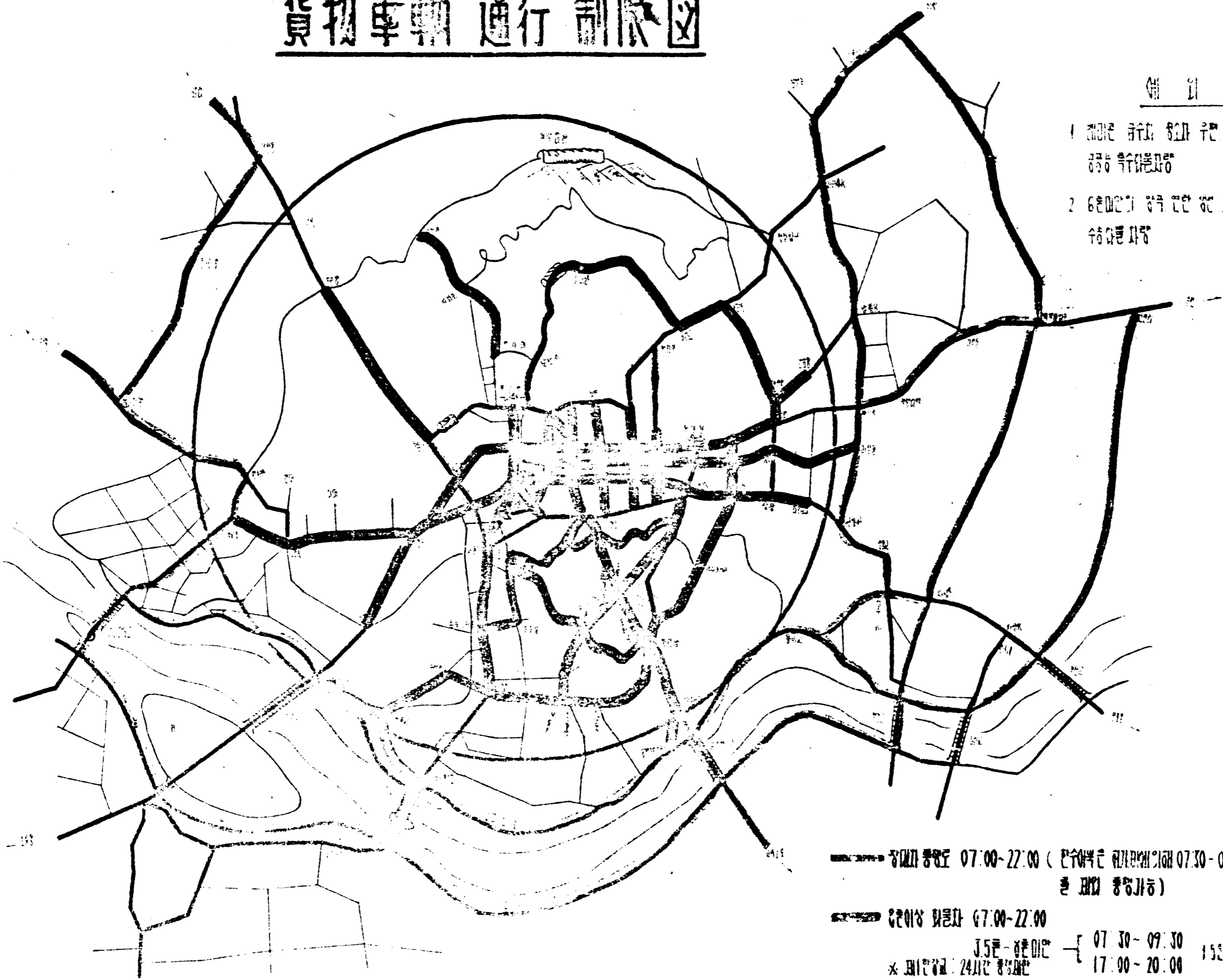
0201-1-4A (2-2)
1972.12.29 승인

190mm×268mm (2급인쇄용지 60g/m²)
표 달 량 (2,000,000여 인 세)

貨物車輛 通行 制限圖

예외 사항

1. 20톤 이하의 차량은 우천 기간에도 수도권내
공공 도로를 통과할 수 있음
2. 6톤 이하의 차량은 우천 기간에도 수도권내
주요 도로를 통과할 수 있음



——— 20톤 이하 차량도 07:00-22:00 (단수해빙은 화요일 제외 07:30-09:30과 17:00-20:00
를 제외 통과가능)

——— 8톤 이상 화물차 07:00-22:00

3.5톤 - 8톤 미만 [07:30-09:30
* 제외안정교: 24시간 통행제한 17:00-20:00

15톤 이상 - 20톤 미만 07:30-09:30

——— 3.5톤 이상 - 8톤 미만 07:30-20:00 제외구역